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 . .<br>(제 회)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br>(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2.30. 공포, '26.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정의와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시행('26.7.1.)될 예정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종류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정의(제4조의16제1항 및 제2항 신설)

1) 1인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개인사업자는 공동사업자가 아닌 기업,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1명인 법인으로 정의

2) 여성 소상공인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여성기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여성기업에 해당하도록 정의

나.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제4조의16제3항 신설)

- 1) 중소기업부는 법 제12의9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자체별 1인 소상공인, 여성 소상공인 현황 등 자료 요청 가능

다.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제4조의4 개정)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나열하고 있는 조문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조문 정비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각 부처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23. ~ 6. 2.)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6(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법 제12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1명인 법인

2. 소상공인이 개인인 경우: 공동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② 법 제12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성 소상공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12의9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자체별 1인 소상공인 또는 여

성 소상공인의 현황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br>-----<br>-----<br>-----<br>-----.<br><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br>-----<br>-----<br>-----<br>-----<br>-----<br>-----<br>-----<br>-----<br>-----<br>-----<br>-----. |
| 1.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설>                                                                                                                                                                                                                                                                                                                         | 제4조의16(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기준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1명인 법인

2. 소상공인이 개인인 경우: 공동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② 법 제12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성 소상공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12의9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자체별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현황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
| 연 락 처           | (044) 204 - 7823 |